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10-10

www.acrc.go.kr

2023

#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 22 집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 | 일러두기 |

『2023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2023년도에 처리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등의 주요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본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그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포상 규모 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직자에게 동일·유사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고, 국민에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일부 사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Contents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제 1 장

### 부패 행위 신고사건

#### ① 2023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타기관 수탁사업비로 외유성 해외여행 의혹	10
2. 공공기관 발주 교량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1
3. 통·반장 신문구독사업 예산 사용 관련 부패행위 의혹	12
4. 이·통장 회의 참석 수당 부정 지급 의혹	13
5.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의혹	14
6. 질병관리청 의료물품 부정납품 의혹	15

#### ②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비 횡령 의혹	18
8. 사립대학교 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의혹	19
9. 사립대학교 입찰 및 공사계약 관련 부패의혹	20
10. 사립대학교 교수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21
11. 방위산업 지원과제 선정 관련 부패행위 의혹	22
12.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의혹	23
13.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원 인건비 편취 의혹	24

## 제 2 장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① 2023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28
2.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9
3.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30
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1
5.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2

# Contents

## 제 2 장

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3
7.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4
8.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35
9.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편취 의혹	36
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혹	37
1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8
12.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9
13. 장애인근로지원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40
14. 수정란 이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1
15. 공무원 유족연금 등 부정수급 의혹	42
16.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3
17. 노인취업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4
18.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45
1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46
20.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47
21. 청소년문화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8
22.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정수급 의혹	49
23.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 부정수급 의혹	50
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51
25.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부정수급 의혹	52

##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4
27. 사립전문대학교의 입사·학사비리 의혹	55
28. 이전기술사업화 사업비 편취 의혹	56
29.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57
30.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58
31. 장애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 의혹	59

## 제 3 장

## 공익신고 사건

## ① 2023년 공익신고 사건

1.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64
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65
3. 건설기술경력 허위 신고 의혹	66
4. 의료법 위반행위 등 의혹	67
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및接客행위 알선 등 의혹	68
6.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69
7. 독감백신 불법 구입 의혹	70
8.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신고	71
9.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의혹	72
10.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 의혹	73
11. 타인의 저작물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의혹	74
12.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	75
13. 금융기관의 입찰조작 및 보험모집질서 위반 의혹	76
14. 무허가 펜션 영업 공익 신고	77
15. 사용자의 허위 근로자 고용 신고 의혹	78
16. 무자격자의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 명찰 미착용	79
17.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80
18. 유흥음식점의 불법 영업	81
19. 개구부 덮개 및 난간대 미설치 등 의혹	82
20.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신고	83

## ②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1. 한방병원의 공익침해행위 의혹	86
22. 중증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장애인) 학대 및 학대 은폐 의혹	87
2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의혹	88
24.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의약품 판매	89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의혹	90

## 제 4 장

###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94
2. 「OO지방병원 소속 공무원의 식사접대 수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95
3.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96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97
5.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98
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99
7.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0
8.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1
9.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2
10.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3
1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4
12.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인용) ... 105
13.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 106

####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4. 「비등록 의료인 진료 및 원장 명의 처방전 발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08
15. 「주유소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09
16. 「농산물 원산지 위반 제조 유통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10
17. 「산업재해 은폐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11
18.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당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 112
19.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 113
20. 「사기업의 불법 폐수처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 114

## 제 5 장

### 참고자료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 118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 122
-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 126

# 제 1 장

---

## 부패행위 신고사건

---

1. 2023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

## 1. 2023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

01

# 타기관 수탁사업비로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

1분과위원회(2023. 4. 24.) |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당초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관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전용하여 국외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감사실 직원을 국외출장에 포함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및 환수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 등 행정 조치 요구 및 2,591만 원 환수조치
  - ※ 통보일자: 2023. 10. 31.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및 피신고자의 경위서,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교차확인

02

## 공공기관 발주 교량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3. 5. 3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이 발주한 교량 공사 관련 설치하지 아니한 비계다리 설치비용 1억 7백여만 원을 청구하였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1억 3백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 2 의결이유**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부과 등 제재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임

-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고재 처리비용을 감액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부서 시정처분 요구 및 훈계처분 요구 조치
    - ※ 통보일자: 2023. 11. 28.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공사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확인

## 03 통·반장 신문구독사업 예산 사용 관련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3. 7. 2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구 신문구독사업을 총괄, 집행, 관리하는 자들로서, 장기간 수십 명의 통·반장들이 신문을 보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피신고자들은 신문사의 신문보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통·반장들이 신문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놓고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신문사에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
- 2) 의결이유** 구독신문사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나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부서 경고조치 및 주의조치 15명
    - ※ 통보일자: 2023. 10. 27.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통화파일 및 녹취록,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교차확인

04

## 이·통장 회의 참석 수당 부정 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8. 21.)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 읍·면·동 이통장 업무 담당자 및 이·통장으로서, 피신고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이·통장 회의(이하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통장에게 회의 참석 수당(이하 '참석 수당')을 지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참석 수당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 기관의 조사 및 부적절하게 지급된 참석 수당의 환수 조치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도 등 4개 감독기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등 3개 감독기관 조사결과, 업무처리의 부적정성이 확인되어 시정 28건, 주의 10건, 6582만 원 환수 추진
    - ※ 통보일자: 2023. 12. 7. / 2023. 11. 9 / 2024. 3. 8.
    - ○○도 조사중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관련자 진술 등 확인

05

##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5. 3.)



-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수도용 부식억제장비 제조업체인 피신고자 2~7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옥내급수관용 부식억제장비를 옥내급수관이 아닌 상수도관의 부식억제 용도로 구매·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
  
- 2 송부이유** 피신고자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및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3 검토결과** 경찰청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업체 대표의 「수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3. 12. 19.
    -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사결과, 관리감독 소홀 및 예산 낭비가 확인되어 기관경고 1, 기관주의 8, 부서주의 9, 부서통보 3, 주의 19명 조치  
※ 통보일자: 2023. 8. 9. 등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83조제1의4(벌칙), 제86조(양벌 규정)
  - **착안사항**: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06

## 질병관리청 의료물품 부정납품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7. 17.)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청에 방역물품을 납품하는 자로 ○○청 소유의 방역물품 600파레트(15억 원 상당)를 창고 밖 지상에 야적하였다가 비를 맞혀 오염시켰는데 이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청 모르게 새로운 상자를 구입·포장한 후 의료기관에 납품하여 공적예산을 편취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의혹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의료물품 납품의 적정성, 오염된 물품납품에 대한 제재, ○○청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 3 검토결과** ○○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방역물품의 침습피해 사실을 숨기고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해금액 7,560,000원을 환수조치하고, 기관주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조치
    - ※ 통보일자: 2023. 11. 10.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질병관리청 담당자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확인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

##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

## 0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20. 9. 21.)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약 40개월간 ○○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주관업체로 참여하여 '○○○ ○○ ○○○○○ 가공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이미 개발이 되어 만들어져 있던 재고품을 마치 국책사업에서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기구부 설계 및 제작 등의 명목으로 약 90% 가량의 국가예산인 과제비를 편취한 의혹
- 2 **의결이유** 재고품을 새로 개발된 제품인 것처럼 속인 정황이 확인되고, 해당 제품 제작에 소요된 자재비를 편취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연구개발비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이러한 범죄, 위반사실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송치
      - ※ 통보일자: 2021. 12. 3.
    - ○○부 조사결과, 부정사용 출연금이 확인되어 325,722,053원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541,117,900원 부과 조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2년 조치
      - ※ 통보일자: 2023. 3. 8.
- 5 **비 고**
  - **적용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
  - **착안사항**: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방문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08

## 사립대학교 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대 교수, 피신고자 2는 ○○부 산하 ○○연구원 연구위원에 재직 중인 자로, ○○시와 ○○개발원에서 각 발주한 연구용역을 피신고자 1이 피신고자 2에게 소개받아 수주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피신고자 2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패 의혹
  - 피신고자 1이 연구용역 종료 후 일부 서류 등을 수정하여 특정 교수 등에게 허위의 자문비를 지급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지도제자의 인건비와 출장비 등을 각출하여 회식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피신고자 1의 금지된 금품 제공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및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3. 3. 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당한 연구실비 조성 및 사적용도 사용이 확인되어 ○○대의 중징계 조치결과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  
※ 통보일자: 2022. 10. 13.
    - △△부 조사결과, 대외활동 관련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피신고자에게 주의조치 요구  
※ 통보일자: 2022. 4. 4.
- 5 비 고**
- **적용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2조(벌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SNS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확인

## 09

## 사립대학교 입찰 및 공사계약 관련 부패의혹

1분과위원회(2022. 5. 1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과 2는 ○○대 평의원회 의장, 동 대학 사무처장, 피신고자 3은 ○○건설 대표로서, 피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대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체에 맞추어 매출실적, 신용등급, 특정공사 이력유무 등 입찰참여조건을 설정하고, 투찰 전에 예정가격을 알려주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의혹
  - 피신고자 3은 대학 공사계약 수주 등을 목적으로 피신고자 1, 2 등 대학 보직자에게 골프·향응을 접대하고,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일부 금액을 피신고자 1, 2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등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형법상 경매, 입찰의 방해,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4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입찰방해 혐의, 일부 금원에 대한 배임수증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3. 2.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관련 녹취록,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 10 사립대학교 교수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5. 3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책임연구자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위 과제의 연구결과로 제출한 의혹
  - 피신고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신고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등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여부 등에 대한 수사 및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인건비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  
※ 통보일자: 2023. 2. 6.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학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통보  
※ 통보일자: 2022. 9. 21.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통장 입출금 내역, 논문 비교대조 등을 종합하여 확인

## 11

## 방위산업 지원과제 선정 관련 부패행위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5.)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은 ○○○○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과제 사전검토를 담당하면서 사업 시행 공고 이후부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 실시 전까지 피신고업체의 과제수행계획서 및 대면평가 발표자료 등을 사적으로 검토해 주고 침묵·보완토록 하여 피신고자 2, 3이 과제에 선정되게 한 의혹
-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업무방해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1은 업무상 배임 등, 피신고자 2와 3은 각각에 대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10. 26.
- 5 비 고**
- **적용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27조(벌칙),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56조(업무상 배임)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 12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5.)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은 ○○공사 안전순찰직원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근로 계약서 상 근무시간(총 9시간, 휴게 1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서 마치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는 것처럼 순찰일지 등을 조작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2는 ○○공사에서 안전순찰원 등을 관리하는 자로 피신고자 1의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의혹에 대한 감사 및 재정 환수, 피신고자 2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안전순찰팀 근무조 및 근무시간을 관련규정 및 본사 지침 등에 따라 편성·운영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요구,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 ※ 통보일자: 2023. 5. 25.
-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 13

##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원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19.) |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2019년 ~ 2022년까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2020년 ~ 2022년 사이 신고자의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수시로 변경·등록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것보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연구원 인건비 편취 행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5. 25.

**5)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 제 2 장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1. 2023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2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 **1. 2023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 01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3. 13.)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센터 직원으로, 보조금과 활동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금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수개의 계좌를 거쳐 보조금 및 사업비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사업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으며, 자신의 출퇴근 등에 활동지원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센터의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하여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5만 원 환수, 활동지원사 2명 자격정지 6개월 조치
    - ※ 통보일자: 2023. 8. 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02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4. 1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급자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식당에서 일한 근로소득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3. 8. 28.
    - ○○시 조사결과, 생계급여 566만 원, 주거급여 107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2023. 6. 9.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03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5. 15.)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법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현금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고, 승용차를 직접 구입하고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관할 보장기관에 소득 및 재산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 조치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 통보일자: 2023. 12. 6.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녀의 계좌로 법당 복비를 받고, 자녀 명의의 차량을 피신고자가 구입하여 실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 중지, 생계·주거급여 1,479만 원 환수  
※ 통보일자: 2023. 11.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04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5. 15.)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교사로부터 인건비를페이백 받는 방법,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방법,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연장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보육 시간을 조작하여 연장보육료를 지원받는 방법, 교사의 퇴직적립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수사와의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기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되어 종결처리  
※ 통보일자: 2023. 8. 18.
    - ○○시 조사결과, 연장보육료 16,000원 환수 결정,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및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30일 (과징금 255만 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0일 처분  
※ 통보일자: 2023. 7.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54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금 등 금지), 제8조(부정 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05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5. 15.) |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주)OO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OOOOO 공단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 조치를 위해 이첩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OO부 조사결과, OOOOOOOOO화 지원금 4,360만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2023. 9. 25.
    - 경찰청: 조사중
  - **위원회 검토의견**
    - OO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06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5. 3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사유로 소속 근로자를 휴직조치(고용유지)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 해당 휴직기간에도 근무를 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직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2023. 11. 28.
    - ○○부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총 6,019만 원 반환명령,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조치  
※ 통보일자: 2024. 1.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07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6. 12.)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실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한 후, 급여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허위 실적자료를 만들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이종계약으로 지원 대상자의 임금액을 부풀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75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375만 원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조치
    - ※ 통보일자: 2024. 1.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08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3. 6. 2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한국인으로 남편이 사망하자, 외국 국적의 남자와 재혼한 뒤 남편의 소득을 감추기 위해 ○○○ 명의 계좌를 빌려 급여를 수령하면서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생계급여 2,922만 원 환수 결정
    - ※ 통보일자: 2023. 7.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9

#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편취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1. 9.)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허위로 직원들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시키면서, 회사직원이 사무실에 비치된 휴대폰 공기계로 출결 관리만 하는 수법 등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감사를 위해 송부

**3 검토결과** 경찰청 및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직원 10~15명의 훈련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년간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2억 737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2023. 10. 30.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훈련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3억 5,926만 원 반환명령 처분
      - ※ 통보일자: 2023. 11.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환수), 제40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1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1. 31.)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 1회 1~2시간 근로하는 자를 정상 근로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부로부터 금액 미상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주)○○의 실제 사업주 ○○○의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2,444만 원 환수 조치, 지원금 지급제한 1년,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1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11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2. 23.)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였고, 아동 2명을 부모와 공모하여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연장보육반의 운영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이익·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도 ○○시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등 총 3,050만 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7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7개월 처분, 피신고자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2023. 7. 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12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3. 6.)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사실혼 관계의 남자와 두 딸을 양육하는 사실과 근로소득을 숨기는 수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사실혼 관계와 근로소득을 숨긴 의혹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경찰청 및 ○○도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5. 8.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 보조금 2,110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2023. 8.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13

## 장애인근로지원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3. 15.)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를 신청하게 하여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내 일반 업무를 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인건비 등 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의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적정 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 및 ○○공단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및 ○○공단 조사결과,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지원인 인건비 7,085만 원 환수 및 1년간 서비스 참여제한 조치
    - ※ 통보일자: 2023. 6. 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장애인고용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14

## 수정란 이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3. 16.)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40두의 한우에 대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침을 위반하여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병행하거나, 피신고자 2가 아닌 피신고자 1이 대리 시술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들의 지방보조금 편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환수 및 행정 조치 등을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경찰청 및 ○○도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1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대상 한우 240두 중 72두에 수정란을 직접 이식 후 시술료 1,450만 원을 반환받은 점, 피신고자 2가 모두 시술하였다며 거짓 보고한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8. 28.
    - ○○도 조사결과, 사업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여 1,675만 원 환수, 향후 5년간 사업참여 제한 조치
      - ※ 통보일자: 2023. 6.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5

공무원 유족연금 등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3. 3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사실혼 관계를 속이고 국가유공자 유족(배우자) 자격으로 보훈급여를 수급하고, 한부모가정 가점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에 부정 입주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및 임대아파트 부정 입주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적정 조치를 위해 송부

3 검토결과 경찰청, ○○부 및 ○○공단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국가유공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10. 26.
    - ○○부 조사결과,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보훈급여 9,007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2023. 7. 17.
    - ○○공단 조사결과, 한부모가정 자격 가점으로 부정하게 입주한 사실이 확인 안되며, 거주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 부정 입주로 볼 수 없음
      - ※ 통보일자: 2023. 6. 1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 16

##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6. 20.)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청년일자리사업인 공예·주얼리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가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였는지에 대한 수사 및 감사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경찰청 및 ○○시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4. 3. 21.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2,800만 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2024. 2. 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및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17

## 노인취업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6. 20.)



- 1 신고내용** 관내 조경관리, 육묘사업 기업 등이 노인 일자리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노인일자리 취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해당사업 감사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도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일부 참여업체들의 허위신청사실이 확인되어 2,166만 원 환수, 참여기업(8개) 보조금 반납, 인턴지원 협약해지, 참여제한(1년) 조치, 해당 운영기관 경고 및 시정조치  
※ 통보일자: 2023. 11.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 18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7. 3.)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들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2가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여 총 1억 6,533만 원 환수 및 기소의견 송치, 피신고자 4가 내일채움공제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여 49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2023. 12. 1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벌칙),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9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8. 14.)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큰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넘는 상속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숨기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가 상속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3 검토결과** ○○시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최근 5년간 부정수급한 생계급여 1,503만 원을 환수, 피신고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지 및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2023. 9.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상속금 세부내역 및 계좌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 20

##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8. 21.)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야간센터'의 대표자로, 일자미상 경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출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관계기관을 속이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조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공단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일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일수·횟수·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1,38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2023. 10.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43조(부당 이득의 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1

## 청소년문화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8. 24.)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센터 前 관장으로 퇴사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운영비로 임차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퇴사 전 위탁운영 용역비 관련하여 허위 채용을 통해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위탁용역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허위 채용을 통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어 조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교육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해당 센터 관련 용역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자 업무상 횡령 고발, 허위 채용 관련 4대보험 거짓 신고 통보 등 허위 채용 관련 인건비 1,401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2023. 11. 1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6조 (감독)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22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8. 28.)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법인사업자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개인사업자 광고비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증빙서류를 수정한 의혹이 있어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협약 내용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비 893만 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856만 원 부과  
※ 통보일자: 2023. 11.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3

##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9. 18.)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참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협회가 미참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국가 사무 위탁용역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에 대한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협회가 미참여 인원을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11억 8,418만 원 환수 및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요구
    - ※ 통보일자: 2024. 2. 15.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9. 19.)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주)○○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금액 미상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698만 원 환수 조치, 피신고자 및 (주)○○ 대표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23. 10.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16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

2  
경남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집

25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10. 16.)



-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 체육시설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후 정산 및 잔액 반납을 하지 않았고,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손실보전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지원받은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피신고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검토결과** ○○시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1억 2,098만 원 환수 결정
    - ※ 통보일자: 2024. 1.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제2장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

## 26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의학 및 약학 분야 연구 관련 업체의 대표로 ○○부, △△부, □□도 등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처와 공모하여 원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선 결제한 이후 과제와 무관한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부 및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부에서는 연구재료 구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였으나 이를 범죄라 보기는 어렵고, 그 이외에 다른 과제 관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피신고자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증거도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  
※ 통보일자: 2022. 8. 11.
    - ○○부 조사결과, 일부 연구과제 수행 중 재료비 허위청구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3,753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2023. 2. 9.
    - □□도 조사결과, 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 통보일자: 2022. 9. 26.
    - △△부, 조사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7

## 사립전문대학교의 입시·학사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20.) |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 2는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기간간 신입생 지원이 미진하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과별로 허위의 입학원서를 작성·신청하게 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며, 동 대학 소속 피신고자 3은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의 출석부와 성적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학생 20명에게 금액미상의 장학금을 재산상 이득으로 취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부정수금액 환수, 감사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1, 2는 이미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확인되어 공소권이 없으며, 피신고자 3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 통보일자: 2021. 3. 29.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신입생 허위등록, 성과포상금 부정지급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성과포상금 6,930만 원 환수 조치, 피신고자 및 관련자 중징계 25명, 경징계 7명, 경고 8명  
※ 통보일자: 2023. 1.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40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73조의 2(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

경남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28

## 이전기술사업화 사업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7. 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단과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았으나, 사업비 가운데 시작품 등의 재료비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사 제품 생산에 제작비용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억 65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부정수급액 환수, 감사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2. 7. 20.
    - ○○부 조사결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자사 제품제작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억 6,088만 원 환수 및 5년간 참여제한 조치  
※ 통보일자: 2023. 2. 1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21. 12. 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신고자 1의 아들을 포함한 6명의 입소자들이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의혹, 입소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무단입소시키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원들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환수 등을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3. 1. 20.
    - ○○도 조사결과, ○○회에 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30일,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부정수급액 9,698만 원 환수, 사회복지법인 ○○ 산하기관 개선명령 조치  
※ 통보일자: 2023. 8. 31.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30

##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29.)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술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홍보를 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업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및 ○○시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지방재정법 위반(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22. 2. 2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수행한 사업은 ○○시 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고 불만한 특별한 근거나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  
※ 통보일자: 2024. 2. 20.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3,557만 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90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2023. 9. 4.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97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등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31

## 장애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1. 3. 15.)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협회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근거없이 자신의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였고, 주간보호센터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수당을 강제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부정수금액 환수, 감사 등 행정 조치를 위해 이첩
-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단체운영비에서 근거없이 자신의 직책 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주간보호센터장의 수당을 갈취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 송치
      - ※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갈취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 통보일자: 2022. 1. 12.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730만 원 환수 조치 및 ○○협회에 대한 개선명령, 담당 공무원 5명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2023. 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5 **비 고**
  -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97조(벌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 제 3 장

---

## 공익신고 사건

---

1. 2023년 공익신고 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3장 공익신고 사건

---

### 1. 2023년 공익신고 사건

---

## 01

##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23. 1. 9.)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22. 10. 6.부터 2022. 11. 13.까지 유튜브에 ‘○○○’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쥐젓 제거 시술 영상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액수 미상의 금원을 받고 해당 시술을 한 사실이 있음
-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고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의 유튜브계정에 쥐젓 제거 시술을 홍보하는 글 등이 확인되는 점, 카카오톡에서 성명불상자가 쥐젓 제거 문의를 하자 피신고자로 추정되는 자가 해당 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고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의자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쥐젓(섬유종)을 제거하는 의료시술업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행하고, 이를 홍보한 행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홍보에 이용한 자료의 캡처본, 제출된 쥐젓제거 피시술자 명단 및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상 위 행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의자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 및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혐의가 인정되어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02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23. 1. 30.) |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신고자 1은 2022. 5. 23. ○○도 ○○시에 위치한 약국이 아닌 ‘○○마트’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정’을 판매하여 피신고자 1과 해당 ‘○○마트’ 대표인 피신고자 2는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 1은 약국이 아닌 ‘○○마트’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을 살펴볼 때, 피신고자 1은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1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고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고자 1과 피신고자 2는 「약사법」을 위반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신고자들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3 의결결과** ○○도 ○○시 및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도 ○○시: 피신고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공익신고자에게 일반의약품 판매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공무원 출장 당시 일반의약품(11개)을 진열·판매하여 고발
- 경찰청: 피의자들은 약국개설한 사실 없이, 2022. 5. 23. 11:26경 일반의약품인 ‘○○○정’ 1개를 4,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3. 2. 23. ◇◇지방경찰청 ○○지청으로 송치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약사법」 제4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03

## 건설기술경력 허위 신고 의혹

2분과위원회(2023. 4. 1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사 퇴직자로, ○○공사 재직 당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서무과·관리부 등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실제 수행하지 않은 ○○○○경력을 신고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공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공사의 자체 감사결과 피신고자가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간 담당업무를 '유지관리'로 기재하는 등 총 5건의 담당업무를 피신고자 자신의 실제 수행 업무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공사가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신고자는 위 ○○공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경력과 관련하여 ○○협회에 경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고자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위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 3) 의결결과** ○○부 및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2회)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14개월 행정처분
    - 경찰청: 피의자가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2호, 제21조제1항을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신고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없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04

## 의료법 위반행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23. 4. 2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이 운영하는 ○○도 ○○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공모하여 허위 내지 부실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등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전자진료기록부상에 피신고자 1이 소속 진료부장 겸 의사인 피신고자 2에게 피로, 급성 통증, 상세불명의 위장염·고지혈증, 요통 등을 이유로 ○○○○ 등 세 가지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점, 피신고자 2가 피신고자 1로부터 같은 증상으로 근무시간 내 전신마취 용도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점, 피신고자 2가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위염, 수면장애, 요통 등을 이유로 신고자 외 3인에게 동일한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점, 특히 위 병원의 내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피신고자 2의 대리처방과 약물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됨. 피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 3 의결결과** ○○부, ○○○공단 및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CCTV 확인 및 본인 실제 진료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동일사항을 이미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서에 조치요청
    - 경찰청: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공단: 요양급여 비용(공단부담금) 7,801,520원 환수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의료법」 제22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0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등 의혹

관계기관 이첩(2023. 5. 4.)



**1 신고내용**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희를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도 ○○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내방한 손님에게 노래 연습장 방값과 주류비, 접대비 등 총 110,000원을 받은 후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희를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간판, 업주가 술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장면 및 접대부가 접객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업주 및 접대부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도 ○○군 및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피신고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90일 조치
    - 경찰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06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3. 4. 26.)



- 1 신고내용**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제2항은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피신고자는 음식점에서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내부 주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자료상 조리를 하는 주방 위생 및 용기 상태가 불량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 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현장 출장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위반사항(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7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07

# 독감백신 불법 구입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2. 26.)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약사법」 제47조의4,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독감백신을 불법으로 구입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신고자 3이 “부장님께 독감백신 부탁해서 알아보신다 했는데 필요하신 분?”이라고 물었고, “전 2개요”, “저 3개요” 등 피신고자들이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대화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들이 독감백신을 불법 구입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으로 구입한 백신으로 불법 의료행위(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주사 및 의료기관이 외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내용 관련 전반적인 조사·수사 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독감백신을 구매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독감백신 주사를 놓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08

##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3. 5. 31.)



- 1 **신고내용** ○○○주식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식품 후면 촬영 사진에는 유통기한이 “○○○○. ○. ○.”로 표기되어 있고, 피신고자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촬영 사진에는 피신고업체가 ○○○○. ○. ○. 해당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자의 주장대로 피신고자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도 ○○군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공익신고  
처리  
절차

09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4. 17.)



**1 신고내용** 피신고자인 차주는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택배물을 운송 및 배송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자료인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볼 때, 차량은 흰색바탕의 비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와 주황색으로 도색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물로 보이는 물품들을 배송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도 및 경찰청에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동일 차량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2건을 접수하여 조사결과 유상운송을 한 행위가 확인되어 운행정지 30일 행정처분
  - 경찰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0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7. 6.)



- 1 신고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는 오픈마켓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110V에서 220V로 변환하는 어댑터’와 ‘220V에서 110V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판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음
-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오픈마켓에서 ‘110V에서 220V로 변환하는 어댑터’와 ‘220V에서 110V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판매하는 자로서, 촬영된 해당 제품에는 인증 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 중지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공익신고자

# 11

## 타인의 저작물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5. 15.)



- 1 **신고내용**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드라마 ‘○○○○’의 ○○○ 사진과 ○○○○ 로고, 글씨체를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고, 드라마에 나온 대사도 약간 수정하여 전단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음
- 2 **송부이유** 신고서 내용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전단지 사진을 볼 때, 피신고자가 드라마 ‘○○○○’에 출현하는 ○○○의 사진과 드라마 대사로 보이는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보자, ○○○’ 등을 활용하여 만든 전단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신고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원 및 경찰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원: 침해의 주장과 항변에서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고,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임으로 저작권법의 신고죄 규정(제140조)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로 사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찰청: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저작권법」 제28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2

##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9. 1.)



**1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에서 '○○○○'을 운영하는 자로서, ○○○○ 관계자가 일본산 냉장 ○○ 포장재 박스를 버리는 장면, ○○시 ○○구에 위치한 ○○○장례식장과 ○○장례식장에 ○○를 납품하는 장면, ○○○○이 공급처인 △△△△으로부터 일본산 냉장○○를 매입하여 ○○○○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는 바, 피신고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음

**2 송부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통하여 볼 때, '○○○○'이 일본산으로 보이는 수산물 보관 상자를 버리는 것은 확인이 되나, 해당 수산물이 ○○인지, 장례식장에 납품했을 때 해당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도 ○○시에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유관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피신고업체의 ○○ 저장창고에 원산지가 일본산으로 표시되지 않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물량(40kg)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520,000원 처분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3

## 금융기관의 입찰조작 및 보험모집질서 위반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0. 8. 11.)



**1 신고내용** ○○○○○회와 △△보험이 사전에 서로 공모하여 <○○○○○회 ○○○○ ○○○ ○○, ○○○ ○○○○ 용역>이라는 사업을 △△서비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당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 모집을 하고, △△서비스 직원이 △△보험 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내부 신고로 신고자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위반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단, 신고자가 조사기관 조사 과정 상 신분공개에 동의하여 조사 과정에서 진술 의향이 있음을 밝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 지도·감독 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부 및 ○○○○원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서비스(주)가 ○○○○○회 발주 '○○○○○ ○○○ ○○ 및 ○○○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3천3백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
    - ○○○○원: △△보험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어 △△보험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보험업법」 제116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4

## 무허가 펜션 영업 공익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3. 8. 4.)



- 1 신고내용**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신고자는 2023년 4월경 ○○○시 ○○구 ○○로에 위치한 ‘○○○’상호로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공중위생법」을 위반하였음
- 2 송부이유**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는 펜션 영업을 한 의혹이 있으나, 피신고자가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공중위생법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1항 및 제20조(벌칙)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공중위생법관리법」 제3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5

# 사용자의 허위 근로자 고용 신고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4. 28.)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주) 공동대표자로, 자신들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계약한 것처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피신고자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을 소속 직원인 ○○○부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는 4명이 피신고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들이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신고업체 소속 ○○○부장이 위 4명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매월 급여를 그 통장으로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신고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고자가 문제삼고 있는 위 4명이 실제 피신고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공단, ○○부 및 경찰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단: 피신고자 4명 중 2명에 대하여 근무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국민연금 취득취소 직권 처리
    - ○○부: 피신고자 4명 중 2명은 근무사실이 없는 자이며,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 이에 고용보험이력을 취소처리
    - 경찰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6 무자격자의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 명찰 미착용

관계기관 송부(2023. 4. 12.)



- 1 신고내용**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피신고자 1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에서 신고자에게 일반의약품인 '○○○○○' 120정을 60,000원에 판매하여 피신고자 1과 해당 약국 개설자(피신고자 2)는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약사법」 제21조에 약사는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 1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이 확인되고, 약사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신고자 1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해당 업소는 2022. 10. 11.자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었기에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대상이 되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0만 원 부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약사법」 제4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7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3. 4. 18.)



**1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등 9건의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였고, ②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응시 수수료 등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③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용서류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공고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제2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충돌되는 듯한 채용 공고내용이 확인되고, 피신고자들의 근로자 채용 공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처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360만 원 및 응시수수료 반환 시정 명령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18

## 유흥음식점의 불법 영업

관계기관 송부(2023. 7. 3.)



- 1 신고내용**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신고자는 ○○도 ○○시에서 ‘○○○○○○’을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해당 업소 음향 반주시설을 사용하여 노래를 하게끔 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바 해당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보이는데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자료상 해당 업소에 밴드음향, 반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도 ○○시 및 경찰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 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 원 부과 처분
    - 경찰청: 일반음식점업으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9

# 개구부 덮개 및 난간대 미설치 등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3. 5. 19.)



**1 신고내용** 신축 공사장 통로인 개구부의 덮개가 미설치된 상태이고 미설치된 덮개 주변에는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휴게실은 지정된 관리자가 없고 물통과 냉온풍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 교육장은 점심시간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시소화시설(소화기,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도 설치되지 않고, 안전관리자는 안전통로와 관련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도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상기 공사 관련 개구부 방호 덮개 및 난간대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 준수 및 안전조치 시행 여부, 피신고자가 소화기 비치, 간이 소화장치 구역 설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3 검토결과** ○○도 및 ○○부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피신고자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 원 처분
    - ○○부: 업주 및 관계수급인 3개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과태료 50만 원씩 총 200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0

##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3. 7. 13.)



-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치과 차량으로 운송하는 등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와 피신고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동 치과의원에서 지역 주민 625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과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및 치과의사와 종사자 고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부패·공익신고  
처리  
절차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3장 공익신고 사건

---

###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

## 21

## 한방병원의 공익침해행위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6. 20.)



- 1 신고내용** 조제실제제 허위신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내부직원들을 활용한 의약품 유통 등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 목록”(증거자료 1)에 코드명은 동일하나 신고 품목과 원내 제조된 품목이 상이한 현상이 확인되고, 병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허위코드 생성 기안”(6-2 자료) 하단에 ‘직원 감면 코드의 조정을 위해 기존 제제 코드의 변경 및 삭제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코드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신고자들이 위 신고내용과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표로 정리한 것으로 원본증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당전 제도를 악용하여 원내에서 제조된 조제실 제제를 외부에 판매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조제실 제제를 제조함에 있어 첨가할 수 없는 성분을 첨가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유기용매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위반 행위를 기술한 서면자료 외에 별다른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사기관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미신고 제조 의약품을 판매함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신고 의약품의 성분 또는 분량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제조함이 사실로 확인되어 「약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 행정처분 및 피신고자들을 고발 조치 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추가적으로 검토 후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수사의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약사법」 제41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2

## 중증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장애인) 학대 및 학대 은폐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3. 18.)



- 1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도 ○○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의 직원으로, 시설 내 ‘○○○’에서 이용자인 ○○○에게 “○~ ○ ○○ ○○”라는 폭언과 함께 ○○○을 들고 이리저리 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뒷머리 부어오름, 복부와 겨드랑이 쓸린 자국과 멍)를 입혔으며, 해당 시설 원장인 피신고자 2는 학대 사실을 은폐하고 피신고자 1을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
- 2 송부이유**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신고자와 피신고자 1과의 대화 녹음파일, 신고자 2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는 피신고자 2의 해당 사건 은폐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해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의 사진과 신고자와 피신고자 1간의 대화 내용을 볼 때, 피신고자 1이 시설 이용자로 보이는 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도 ○○시 및 경찰청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피신고자는 신고 직후 업무배제되었고, 퇴사하여 피해자와 분리조치되었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선고 받음
    - 경찰청: 피신고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선고 받음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0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부패·공익신고

23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4. 18.)



- 1 신고내용**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에 주축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① 장기수선충당금 무단 전용, ② 경비원 폭행, ③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예방, ④ 소화기 미점검, ⑤ CCTV 설치 관련 미동의 등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는 해당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가 ○○시로부터 재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세부항목에 대해 신고하였는데 신고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부 및 ○○도 ○○시에 송부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1) 폭행: 가해자로 보이는 입주민 내지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반면,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 특정 곤란
      - 2)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법 적용 제외
      - 3) 근로자명부, 계약서류, 임금대장: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법 위반사항 없음
      -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나, 시정지시 하기로 조치
    - ○○도 ○○시: 관리비 타 용도 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10,000천 원을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24

##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의약품 판매

관계기관 이첩(2022. 3. 30.)



- 1 신고내용**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적어야 하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는 어플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사항을 미기재 및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서비스로 배송받았고 약제 용기에 용법 및 용량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의약품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신고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가 약제 용기에 용법 및 용량 등을 적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환자에게 복약지도 하지 않은 부분은 각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외견 송치 및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 약사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의약품 택배수령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불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약사법」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25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의혹

관계기관 이첩(2022. 7. 12.)



- 1 신고내용**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신고자는 인터넷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을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위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2 송부이유** 신고자 진술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고자로 추정되는 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사용 월 30만 원 사용조건으로 ○○○을 지원해 준다는 메시지 내용, 입금자명 카드로 성명불상에게 ○○○을 입금해 준 내역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고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 3 검토결과** ○○위원회에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카드사 자체적으로 심의 결과 피신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불법모집 유형-대필, 본인확인 미흡, 과다경품제공)하여 해당 모집인을 불법 영업확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 및 여신금융협회 모집인 등록 해지 실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착안사항**: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 제 4 장

---

##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4장**

###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

## 0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2. 2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2. 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고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바우처카드로 급여비용을 결제하거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1,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31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식사접대 수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2. 2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2. 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식사접대 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5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방법원 공무원인 피신고자 1이 도시개발업체 회장인 피신고자 2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를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한 청탁금지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750여만 원의 과태료결정이 있었으며, 위 과태료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225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03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5. 30.) | 보상심의위원회(2023. 5. 4.)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35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 대표인 피신고자가 이종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35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36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0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7. 24.) | 보상심의위원회(2023. 7. 7.)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87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유치원 원장인 피신고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직원과 공모하여 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라고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2,277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163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05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3. 8. 21.) | 보상심의위원회(2023. 8. 4.)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9,49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테크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 위 신고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5조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 3,163여만 원, 추가징수액 6,326여만 원을 환수 결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9,49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나 환수금액이 결정보상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부 지급함
- 3 결정결과**

  - 1,423여만 원의 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정청구등의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0. 23.) | 보상심의위원회(2023. 10. 1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장인 피신고자가 실제 진행하지 아니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벌금 150만 원과 부정수금액 4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07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0. 23.) | 보상심의위원회(2023. 10. 1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72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사회적기업 대표인 피신고자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지원받아 1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 1,420여만 원의 환수결정 및 피신고업체에 벌금 300여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516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0. 23.) | 보상심의위원회(2023. 10. 1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93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짓게 하고 도지를 지급받아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 317여만 원과 제재부가금 320여만 원, 벌금 300여만 원이 환수 및 부과 처분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281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09

##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1. 20.) | 보상심의위원회(2023. 11. 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4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군청 공무원인 피신고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무료급식 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30회에 걸쳐 대체식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40여만 원과 제재부가금 200여만 원이 환수 및 부과 처분되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72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2. 1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12. 1.)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9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학원 부원장인 피신고자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많음에도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397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19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11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2. 1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12. 1.)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1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신고자가 원생들의 등·하원 태그키를 직접 관리하면서 원생들의 하원을 17시 이후에 허위 태그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13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34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3. 27.) | 보상심의위원회(2023. 3. 8.)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노무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으니 구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점, 노무사 선임 비용이 이 신청 건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 이후 피신고시설의 원장 및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해 노무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으니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함
  - 노무사 선임 비용과 이 신청 건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함
- 3 결정결과**

  - **인용:** 노무사 선임 비용과 신청 건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착안사항:** 해당 신청이 구조금 지급사유 인지 여부 등

## 13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3. 4. 24.) | 보상심의위원회(2023. 4. 7.)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으나, 피신고자가 물품의 구매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약 2억 원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이 수사 기관 및 조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신고와 공공 기관 수입의 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3 결정결과**

  - **기각:**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 관련성 없음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9조
  - **착안사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14

## 「비등록 의료인 진료 및 원장 명의 처방전 발행 등 의혹」건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3. 2. 28.) | 보상심의회(2023. 2. 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비등록 의료인 진료 및 원장 명의 처방전 발행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 원장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비등록 의사들이 진료하고 이들의 처방전을 병원장 명의로 발행한 의혹이 있다며 위원회에 공익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 등이 기소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억 4,000여만 원 상당을 환수 처분하였음
  - 이 신청 건은 신고의 기여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상금 지급 예외 사유인 공익침해행위신고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으로의 전환지급을 검토하였는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5,175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 **착안사항:** 해당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해당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 「주유소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3.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3. 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주유소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의혹」건을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휘발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했다고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5,0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 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0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16

## 「농산물 원산지 위반 제조 유통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7. 24.) | 보상심의위원회(2023. 7. 7.)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산물 원산지 위반 제조 유통 의혹」건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수입산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 참기름으로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3,000여만 원이 선고되어,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17

## 「산업재해 은폐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2. 18.) | 보상심의위원회(2023. 12. 1.)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산업재해 은폐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2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10명)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는 등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1명)에게 과태료 72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 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44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18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당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3. 12. 18.) | 보상심의위원회(2023. 12. 1.)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당청구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 1(피신고의원 원장)이 피신고자 2(간호조무사)에게 환자들의 스케일링을 시키는 등 자격이 없는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 1에게 벌금 500만 원, 피신고자 2에게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3 결정결과**
- 12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3. 8. 21.) | 보상심의위원회(2022. 4. 8.)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나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병원 대표인 피신고자가 직원이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표를 조작하여 급여비용을 부정수령하고 있다고 ○○시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로부터 76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서 수급자들에게 전액 지급해야 할 금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결정결과**

  - **기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 없음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20

## 「사기업의 불법 폐수처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3. 10. 23.) | 보상심의회위원회(2023. 10. 13.)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기업의 불법 폐수처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무단으로 흘려보낸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사용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바, 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3 결정결과**

  - 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없음
- 4 비 고**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착안사항:**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제 5 장

---

## 참고자료

---

1.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이해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제5장 참고 자료

---

###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

01

#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 가. 부패신고 및 처리

###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0조

### ☑ 신고대상: 부패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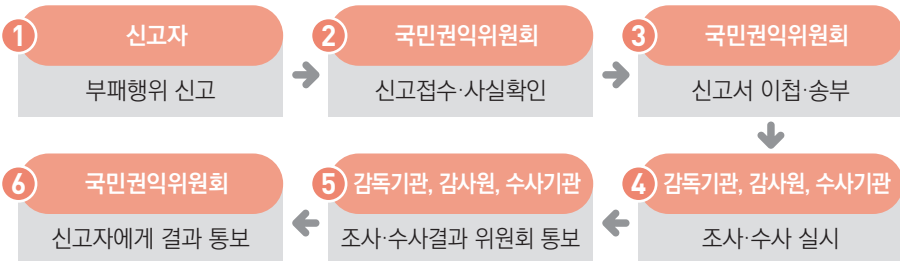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신고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 가능
-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기재), 증거 첨부

###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 나. 공익신고 및 처리

###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49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신고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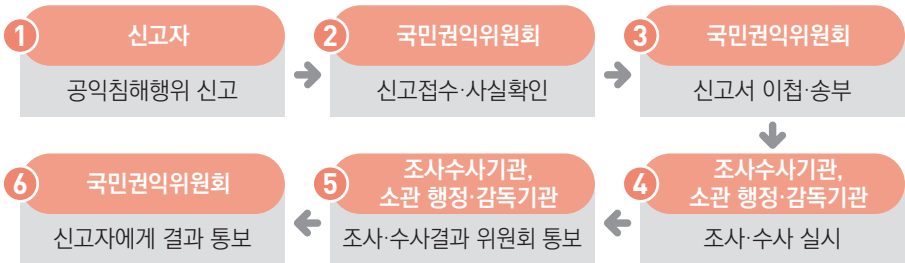
- (주체) 누구든지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 가능

#### | 공익신고 대상 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소관 행정·감독기관	• 국회의원

-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 기재), 증거 첨부

#### | 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절차 |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사·수사 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 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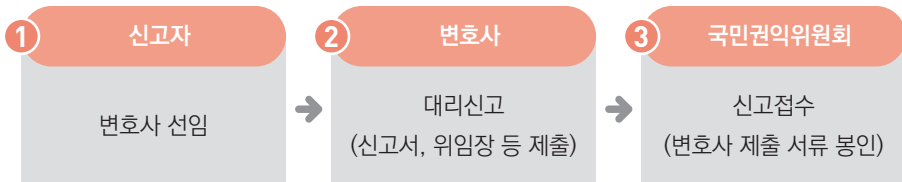
###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 주요 내용

- (개요)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
- (내용) 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고, 이후 증거자료 제출, 이의신청 대리 등 추가 조력이 가능
  -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신고서·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을 봉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
    -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수사·쟁송 절차, 보호·보상 신청 등의 절차까지 조력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4. 8. 7. 시행)
- (자문변호사단)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자문 변호사단을 위촉·운영중
  - 자문변호사단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자문변호사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

### ☑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 제5장 참고 자료

---

###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

02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 가. 신고자 보호제도

####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협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부패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 협조자 또는 그 친족·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 (신변보호 사항) 특정시설에 보호, 신변 경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 책임감면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 또는 면제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요구,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를 의무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또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 유형 |**

불이익 조치 유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⑦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 나. 신고자 보상제도

### ☑️ 보상금

- (지급대상)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내부 신고자(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요건)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li> <li>•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li> <li>•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li> <li>•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li> <li>•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li> <li>•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또는 통고 처분</li> <li>•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li> <li>•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li> <li>•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li> <li>• 과징금의 부과</li> <li>• 부담금·가산금 부과 등</li> </ul>

- 보상금 지급금액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4~30% (상한 30억원, 하한 3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4~30% (지급 한도액 폐지, 하한 30만원)</li> </ul>

### ☑️ 포상금

- (지급요건) 신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 재량으로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포상금 지급사유(지급금액: 5억원 이내)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li> <li>•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li> <li>•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li> <li>•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li> <li>•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li> <li>• 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li> <li>• 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li> </ul>

### ☑ 구조금

- (지급대상)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요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구조금 지급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붙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92개	
72개	〈건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	가축전염병 예방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건강검진기본법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	검역법
26	결핵예방법
3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49	공중위생관리법
64	국민건강보험법
65	국민건강증진법
68	국민영양관리법
7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04	노인복지법
1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0	농약관리법
117	담배사업법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14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47	모자보건법
17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87	비료관리법
192	사료관리법
2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3	소금산업 진흥법
2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0	식물방역법
261	식물신품종 보호법
2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64	식품산업진흥법
265	식품안전기본법
266	식품위생법
279	약사법
280	양곡관리법
28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11	위생용품 관리법
3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2	의료급여법
323	의료기기법
3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25	의료법
330	인삼산업법
3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8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8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92	종자산업법
408	지역보건법
4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2	청소년 보호법
432	축산물 위생관리법
4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4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0	학교급식법
451	학교보건법
477	혈액관리법
47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81	화장품법
490	환자안전법
49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29개	〈안 전〉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건설산업기본법
20	건축물관리법
22	건축법
23	건축사법
28	경비업법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공연법
51	공항시설법
53	광산안전법
5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6	교통안전법
5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7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82	궤도운송법
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5	기계설비법
100	낙시 관리 및 육성법
111	농어촌도로 정비법
112	농어촌정비법
113	농업기계화 촉진법
1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28	도로교통법
129	도로법
130	도선법
132	도시가스사업법
13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7	도시철도법
141	동물보호법
1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4	보안관찰법
1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8	사회복지사업법
206	산업안전보건법
2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9	석면안전관리법
22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24	선박안전법
22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26	선박직원법
228	선원법
2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35	소방기본법
2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7	소방시설공사업법
238	소방장비관리법
243	승유관 안전관리법
251	수상레저안전법
25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5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71	아동복지법
2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8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85	어선법
28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9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09	원자력안전법
31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313	위험물안전관리법
3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38	자동차관리법
34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0	재난안전통신망법
363	재해구호법
3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6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68	전기공사업법
369	전기사업법
370	전기안전관리법
3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75	전력기술관리법
3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5	정보통신공사업법
391	제품안전기본법
396	주차장법
397	주택법
40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5	집단에너지사업법
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9	철도안전법
42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24	청소년활동 진흥법
425	청원경찰법
42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59	항공보안법
461	항공안전법
462	항로표지법
463	항만법
466	해사안전기본법
467	해상교통안전법
468	해양경비법
4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8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4	화학물질관리법
80개	〈환경〉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6	골재채취법
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9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2	내수면어업법
115	농지법
1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1	대기환경보전법
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	물환경보전법
15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4	사방사업법
20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	산림보호법
2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	산지관리법
2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40	소음·진동관리법
24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44	수도법
24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48	수산업법
249	수산자원관리법
2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7	습지보전법
270	실내공기질 관리법
276	약취방지법
2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1	양식산업발전법
286	어장관리법
287	어촌·어항법
293	연안관리법
29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40	자연공원법
340호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42	자연환경보전법
3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6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11	지하수법
430	초지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39	토양환경보전법
443	폐기물관리법
44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8	하수도법
449	하천법
4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6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7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75	해양환경관리법
48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86	환경보건법
48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8	환경영향평가법
48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01개	〈소비자 이익〉
11	개인정보 보호법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계량에 관한 법률
3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4	고용보험법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52	관광진흥법
58	국가기술자격법
85	근로복지기본법
8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9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2	금융지주회사법
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4	대외무역법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5	말산업 육성법
1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5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54	물류정책기본법
1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65	방송법
17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8	보험업법
18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8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9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1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5	산업디자인진흥법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9	산업표준화법
211	상표법
212	상호저축은행법
213	새마을금고법
2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21	석탄산업법
239	소비자기본법
24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4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6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9	신용협동조합법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5	아이돌봄 지원법
288	에너지법
2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1	여신전문금융업법
296	영유아보육법
2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9	예금자보호법
3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06	외식산업 진흥법
307	우편법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6	유아교육법
319	은행법
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3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36	입양특례법
337	자격기본법
3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55	장애인복지법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73	전기통신기본법
374	전기통신사업법
376	전자금융거래법
3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7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79	전자서명법
38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8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8	중소기업은행법
40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13	직업안정법
418	철도사업법
433	축산법
4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40	통신비밀보호법
44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64	항만운송사업법
476	해운법
4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2개	〈공정한 경쟁〉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	경륜·경정법
69	국민체육진흥법
7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8	유통산업발전법
3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6	저작권법
38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94	주민투표법
39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0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5	한국마사회법
460	항공사업법
88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1	고등교육법
3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0	공공주택 특별법
41	공동주택관리법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9	국가보안법
60	국가재정법
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7	국민연금법
71	국유재산법
7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9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81	군형법
83	귀속재산처리법
84	근로기준법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97	기초연금법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6	노후준비 지원법
1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60	민방위기본법
16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6	방위사업법
16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	병역법
1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84	부정수표 단속법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8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8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93	사립학교법
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72	아동수당법
297	영해 및 접속수역법
300	예비군법
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4	임금채권보장법
3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5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56	장애인연금법
3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6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62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84	전파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93	주거급여법
4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404	지방세기본법
4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6	지방재정법
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1	청소년 기본법
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428	초·중등교육법
434	출입국관리법
44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56	한부모가족지원법
47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48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이용 안내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우 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 스 (044) 200-7972

인 터 넷 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전 화 상 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2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 2024년 6월

본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Tel. 044)200-7688 Fax. 044)200-7943